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5. 12 선고 2019나407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0. 5. 12 선고 2019나4077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. 6. 27 선고 2019가소307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류수연

피고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우근

변론 종결2020. 4. 7.

판결 선고2020. 5. 12.

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9가소307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 취소. 10,803,045원 및 이에 대한 2018. 1. 24. 이후 지연손해금 지급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는 2017. 10. 13. 피고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빌렸다(변제기 2018. 10. 13., 이자 연 24%: 갑1). 그 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앞으로 2017. 10. 19. 근저당권 설정등기를, 10. 25.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를 해 주었다. 피고는 2017. 10. 13. 원고에게 200만 원을 제외한 1억 8백만 원을 지급하였고, 원고는 2017. 10. 19. 피고에게 126만 원을 등기비용 등 경비로 지급하였다. 원고는 2018. 1. 23. 피고에게 합계 121,719,330원을 지급하였고, 같은 날 피고로부터 다시 6천만 원을 빌렸다.

2. 판단

원고는 2017. 10. 13. 공제한 200만 원은 선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므로 대여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담보권 등기비용 등 각종 경비를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므로 대여원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. 피고가 제출한 비용관련서류(을2)와 담보권 등기가 순차 경료된 사정 등에 비추어, 2017. 10. 19. 받은 126만 원 외에 별도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.

원고는 2017. 12. 13. 피고의 남편 C에게 현금 2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, 갑5 등 원고 제출 자료들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

원고는 2018. 1. 23. 피고가 지급받은 121,719,330원은 그 권리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과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 피고는 그 돈에는 이 사건 대출 원금, 이자, 지연손해금, 담보권해지 비용 외에도 같은 날 이루어지는 추가 대출금 6,000만 원 관련 담보권설정 등 각종비용 등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과 직접 관련 없는

부분이라고 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. 등기부등본(갑2)에 드러난 원고의 금융상황,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관계 및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,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박이규

판사이흥권

판사이효두